

(재)한국전통문화전당 시루방 대관 및 운영 규정

제정 2015. 10. 20.

(일부개정) 2017. 3. 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한지산업지원센터 포함) (이하 “전당” 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시설 내 시루방(조리체험실)의 대관(사용료 징수 등) 및 시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시루방(조리체험실)의 대관·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루방(조리체험실)

제3조(사업) 조리체험실의 대관·운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개정 2017.3.21.)

1. 전통음식의 보존, 계승, 재창조를 위한 교육
2. 전통음식 체험·교육·전시 및 음식창의도시 구현
3. 전통음식 인력 양성 교육
4. 지역특화 전통음식 전문·체험 교육
5. 시민의 문화 향상을 위한 교육
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4조(사용허가) ① 원장은 조리체험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7.3.21.)

② 조리체험실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 운영계획서

2. 조리도구 및 식재료 반입·반출 허가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③ 허가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규정 제4조 제 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한다.(개정 2017.3.21.)

⑤ 원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제5조(사용시간) ① 조리체험실의 1회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아래 시간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전 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 오전 09:00 ~ 12:00

2. 오후 13:00 ~ 17:00

3. 야간 18:00 ~ 22:00

② 사용시간의 기간은 조리 교육·체험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조리도구 및 식재료의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지는 때로 하며, 사용 종료시점은 조리체험실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제6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① 원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리체험실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전주시 전통문화 육성·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며, 이용시간이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용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개정 2017.3.21.)

② 조례에서 정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냉난방, 부대설비 등의 운영을 위한 실비(전기료, 가스비 등)는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수령할 때에 조례에서 정한 대관료의 100분의 30이상을 계약금으로 전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나



머지 사용료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잔금납부 이후에 발생한 추가 사용료는 전당이 별도로 정한 기일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⑤ 냉난방을 위한 실 사용료(전기세 등)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효율에 의거 산정한다.
- ⑥ 조리 교육·체험을 위한 실 사용료(가스시설사용료)는 가스계량기 측정에 의거 산정한다.
-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전당의 세입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신청) ①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3.21.)

제8조(사용료의 반환) 규정 제6조 제1항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규정 제9조의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
- 2. 사용예정일 14일전에 계약취소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하고 7일전 계약 취소시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7.3.21.)

- 1. 시설사용이 대관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
- 2.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3. 대관조건을 어기거나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취소한 사실이 있는 자
- 4.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5. 기타 원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자 의무) ① 사용자는 조리체험실 사용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조리체험실의 사용승인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전당의 사전 승인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원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개정 2017.3.21.)

③ 사용자는 조리체험실 사용과 관련하여 전당이 규정한 사항 및 이행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전당은 시정을 요구하고 시설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사용승인을 철회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통보한다.

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 중단 시에는 지체 없이 반입한 조리도구 및 식재 및 계첩 홍보물 등을 철거하고 조리체험실 시설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리도구 및 식재료 반입·반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조리도구 및 식재료 반입·반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조리체험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액은 감정평가액 또는 2개 이상의 업체견적 평균으로 한다.

제12조(입장의 제한) 원장은 조리체험실의 유지·관리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험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3.21.)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만취자, 정신이상자
3. 조리교육·체험 등에 방해가 되는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자
4. 기타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조리교육·체험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5.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유아 입장을 제한



제13조(광고 및 홍보) 사용자는 조리교육·체험 등에 필요한 각종 광고나 홍보물 제작 시 관련사항은 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전당 내에 홍보물 부착은 전당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는 홍보물을 부착할 수 없다.(개정 2017.3.21.)

제14조(방송) 조리체험실에서 행하여지는 조리교육·체험을 방송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 장비의 종류, 위치 및 등 관련사항을 사전협의한 후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3.21.)

제15조(운영비 보조) 원장은 조리체험실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리체험실 운영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3.21.)

제16조(적용 규정) 이 규정은 전당과 사용자 쌍방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고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관련법령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2호 서식]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1. 사용자성명(단체명) :
2. 사용자 주소 :
3. 변경신청 사유 :
4. 변경신청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기 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시루방 대관 및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20 년 월 일(허가번호 제 호)받은 사용허가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 귀하

사용변경 허가서

1. 사용자 성명(단체명) :
2. 사용자 주소 :
3. 변경허가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용기간 및 시간(횟수)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대시설			
기 타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시루방 대관 및 운영규정」 제4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을 (불)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직인)

[별지 제3호 서식] <2017. 3. 21. 개정>

허가번호 : 년 호

사 용 허 가 통 지 서					
신청인	성명(단체명)		실무자 (담당자)	성명 :	전 화 : 휴대폰 :
	사업자등록번호			e-mail :	
	주 소				
	대표자 성명		나이(만)		전화번호
	주 소				
사용목적	명 칭				
	종 류	<input type="checkbox"/> 단순체험 <input type="checkbox"/> 요리실습 <input type="checkbox"/> 요리교육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 계 스 계	구 분	<input type="checkbox"/> 조리체험실 <input type="checkbox"/> 조리평가실 <input type="checkbox"/> 전처리실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관목적	사 용 일 자		사용회수	사용료(원)
	준 비	20(:) ~ 20(:)(시간)		오전(회), 오후(회), 야간(회)	
	본 체험	20(:) ~ 20(:)(시간)		오전(회), 오후(회), 야간(회)	
	철 수	20(:) ~ 20(:)(시간)		오전(회), 오후(회), 야간(회)	
조리평가실 사용여부	<input type="checkbox"/> 사용 [20(:) ~ 20(:)] <input type="checkbox"/> 미사용				
감면	감면사유				
	감면액				
사용료	1. 총사용료 : 2. 사용보증금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보증금 원(총사용료의 30%) 2) 납부기한 : 20 3. 사용료 잔금 납부 1) 납부금액 : 사용료 잔금 원(총사용료 원 - 사용보증금 원) 2) 납부기한 : 20				
비 고	뒷면 허가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함(불허가시 불허가사유 기재)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시루방 대관 및 운영규정」 제4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직인)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조리체험실 대관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사용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사용보증금 납부 후 본 허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용보증금을 공제한 사용료 잔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4. 사용자가 사용보증금 및 사용료 잔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영수증을 즉시 전당에 제출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전당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5. 납부된 사용보증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료는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조리체험실 대관규정」 제8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6. 사용기간 중 조리체험실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파손, 분실한 때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 허가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전당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회복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7.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전당에 반입한 각종 도구·재료(조리도구, 식재료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에 대하여 전당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8. 사용기간 중 전당에 반입한 도구·재료 등은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종료 즉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당 원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원장은 원상복구로 인한 반입 설비·물품 등의 파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9.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조리체험실 질서유지와 안전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10.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한 권리를 전당 이사장의 허가 없이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11. 본 허가조건의 해석과 관련하여 전당과 사용자의 해석이 다른 경우는 전당의 해석이 우선한다.